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96호
- 나. 제출자 : 고성미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2. 6.
- 라. 회부일자 : 2023. 2. 6.

2. 제안이유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
- 나.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다.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에서 제6조)
- 라. 부실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부실공사 신고, 처리, 측정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제10조)
- 바.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관계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49조, 제53조~제55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5. 검토의견

① 제정 배경

- 현재 건설공사는 대부분 전자공개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인해 사전에 우량업체 선발이 어렵고, 부실 시공시 하자 보수 등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 품질 확보 및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도모하기 위함

② 주요 사항별 내용

-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정함.
- 안 제4조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품질관리,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도록 함.
- 안 제5조와 제6조는 공사감독이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 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토록 하여 품질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는 민원감사담당관에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
- 안 제8조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방법과 신고내용을 규정하고,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함.
- 안 제9조는 민원감사담당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공사감독은 부실여부 증명 및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토록 함.
- 안 제10조는 신고된 건설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실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되, 필요시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는 공사비 3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 점검 및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금천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3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0. 6. 9.>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과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별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별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별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